

2022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제7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9. 27.(화), 13:00 ~ 18: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효대, 이상석, 양은경, 위광철, 조인숙,  
최종덕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 고지사항

###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 1 | 「김해 분산성(사적)」 붕괴성곽 긴급보수      |  |
| 2 | 「대구 구암동 고분군(사적)」 봉분정비공사     |  |
| 3 | 「만해 한용운 심우장(사적)」 배수 및 조경 정비 |  |
| 4 | 「부여 가림성(사적)」 성벽 정비          |  |
| 5 | 「담양 금성산성(사적)」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  |

## 【보고사항】

- |   |                           |  |
|---|---------------------------|--|
| 6 |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          |  |
| 7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의견수렴(안) 보고  |  |
| 8 | 「문화재수리 한식기와·전돌 사용기준(안)」마련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2-7차-001)

### 1. 김해 분산성 붕괴성곽 긴급보수

#### 가. 제안사항

-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김해 분산성(사적)」 성곽보수 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4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분산성 봉수대 서측 80m지점 성벽이 일부 붕괴되어 긴급복구 하는 사업으로,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해시장(가야사복원과)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분산성(사적)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산9번지 일원
  - 지정일 : 1963. 1. 21.
  - 삼국시대 퇴메식 석축 산성으로 둘레가 929m로 동,서,북 3개문지와 남암문지, 봉수대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구간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김해 분산성 봉수대 서측 성곽 붕괴보수
  - 공사예정금액 : 1,185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붕괴된 성곽복구의 설계 및 시공,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긴급보수사업 지침)
  - 사업내용 : 김해 분산성 붕괴구간(봉수대 서측 80m 지점) 성벽복구 및 좌우 지점 균열 등 붕괴우려 되는 성벽의 해체보수(보수범위 L=30m)
- (4) 신청인 의견
  - 집중호우로 인해 성벽이 일부 붕괴 되었고 좌·우측 연접성곽 부분도 배부름 및 탈락 등 추가 붕괴위험이 있어 신속히 긴급복구공사를 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라. 현지조사 의견

< 2022. 7. 1.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000, 토지주택박물관 전문위원 000>

- 붕괴된 성돌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까지 해체 후 자문회의를 통하여 붕괴원인 확인 및 정비방안 수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2. 7. 1.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000>

- 사면안정해석과 현재의 붕괴형상을 고려한 역설계를 통하여 지반정수값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하여 성곽쌓기 단면을 확정해야 할 것을 사료됨
- 성벽 해체범위는 붕괴구간 좌우측 성벽의 기울기 측정, 면석이격조사 및 면석 균열조사를 근거하여 제시하고, 자문회의를 통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2. 7. 29.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000, 토지주택박물관 전문위원 000>

- 잡석으로 채워진 기 복원성벽 적심부의 잔존상태를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심부의 해체범위와 정비방법은 트렌치 조사를 통하여 원 지반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2022. 8. 16.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000>

- 성곽 하단부 미해체 높이의 확정은 시공시 해체 된 상태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해야 함을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할 것
- 시공 시 트렌치 조사를 통한 뒷채움, 지대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2022. 8. 17.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000, 토지주택박물관 전문위원 000>

-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하되 횡단면도 의 면석부 심석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심석을 설치하고 심석 길이는 900mm 내외로 조정할 것
- 시공 시 붕괴구간 해체 중, 후 조사를 선행하여 쌓기 형식의 구조를 파악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 보수범위 및 기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것.

## 마. 검토의견(안전기준과)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이 설계도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바. 기타의견

- 우기 시 물이 성벽으로 유입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내측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설치 된 배수로에 연결 최종 배수처리 계획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보고서와 기존 정비공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김해 분산성의 원래 석재 규격과 쌓기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은 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의 보강방안을 적용토록 함. 아울러, 석재 가공 및 쌓기에 대한 상세 도면을 보완토록 함
- 설계안에서 금회 보수 구간과 이와 인접한 미보수 구간 간 쌓기 방식이 상이하  
여 강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 배수로 규격은 수리계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2. 대구 구암동 고분군 봉분정비공사

### 가. 제안사항

- 대구광역시 복구 소재 「대구 구암동 고분군」 56, 58호분 및 배장분(10기)의 봉분 복원정비공사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으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봉분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복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 사적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복구 구암동 45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8. 8.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56-58호분 봉분 정비공사
  - 사업년도 : 2022년
  - 사업예산 : 135,000천원 / 설계비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봉분정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 공사예정금액 : 금885,000천원
  - 사업내용
    - 봉분 : 56, 58호분 및 배장분(10기) 복원정비
    - 주변정비 등
      - 봉분 주변부지 잔디식재 : 1,065.19㎡
      - 탐방로 야자매트 설치 : 124㎡(W=2m, L=62m)
      - 목재로프난간 설치 등 : 59.54m
- (4) 수리이력 등
  - 발굴조사 이력

| 사업년도                | 사업내용  |
|---------------------|---|
| 1975.               | 제56호분 발굴조사(발굴기관 : 영남대학교박물관)                       |
| 2019. 4.            | 제56호분 시굴조사(발굴기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 2019. 8.            | 제56호분 정밀발굴조사(발굴기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 2020. 8.            | 제58호분 정밀발굴조사(발굴기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 2021.6.<br>~2022.5. |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br>(발굴기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 보수정비 이력

| 사업년도                | 사업내용  |
|---------------------|---|
| 2017.5.<br>~2018.4. | 대구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정비복원사업<br>: 대구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정비                                    |
| 2021.6.<br>~2021.9. | 대구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주변정비공사<br>: 1호분 주변 잡목제거 및 정비, 58호분 주변 임목폐기물 처리<br>및 주변정비, 폐창고 철거 |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9. 2. 현지조사 의견 / 복원정비분과 000, 매장문화재분과 000, 000 위원 >

- 금회 사업지는 발굴조사 후 주석곽 및 부장석곽, 잔존 개석 및 호석 등의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상태임.
- 금회 사업은 대구 구암동 고분군 내 56호분 및 58호분과 배장분(10기)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각의 단위 고분이 동일한 축조기법을 보이고 있으므로 외형을 연접식 구조를 갖춘 고분으로 복원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묘곽 위에 잔존개석을 시설하고 밀봉토 등 유구보호층을 조성한 다음 이 위를 할석으로 적석층을 채우며, 봉분 피복토는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식재를 계획하고 있음
  - 제56호분과 제58호분의 중심 고분과 주변 연접분은 축조당시 순서대로 봉분을 덧붙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됨. 이에 대해서는 발굴기관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음
- 잔존하거나 유실된 유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 원칙에 대해서 발굴조사 보고서에 제시되거나 정비 설계자가 발굴조사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함.
- 묘곽을 구축하고 성토에 다량의 할석이 사용되는 적석봉토분으로 구획석렬로 분할된 봉토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할석과 점토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시공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음



- 사업 부지 내 경작 행위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래의 지형을 살려 복원을 계획토록 함.

**< 2022. 6월 설계자문 / 관계전문가 000 >**

- 복원도면은 고분의 기저부 길이와 높이, 그리고 해당 고분의 매장주체부가 포함된 잔존유구, 잔존 구획석렬 등을 고려하여 적절·타당하게 보호토, 피복토, 적석봉분 등을 설계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봉분의 모습은 56호와 58호가 연접되어 56호와 58호의 매장묘가 덧붙여진 하나의 봉분으로 연결되었으나 변형 표형봉분과 유사한 모습으로 구암동 56호, 58호 고분의 봉분특성을 제대로 살린 설계도로 판단되어 발굴도면을 잘 반영한 도서로 판단됨
- 56호, 58호 고분과 그 매장묘의 입지와 주변지형을 반영한 도면으로서 배수고려도 잘 했다고 판단되며, 적석봉분의 특성상 잔디식재 및 생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복토(30cm)도 잘 입혔음. 평떼 잔디식재도 잘했음.

**< 2022. 5월 설계자문 / 관계전문가 000, 000 >**

- 봉분은 발굴된 사항과 동일하게 토석혼축으로 채워 쌓되 가능한 한 기존 적석 석곽분의 봉분에서 썼던 석재를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석재는 외부에서 동일 유사한 석재의 할석을 사용하도록 할 것
- 흙과 석재는 오염되지 않은 석재로 할 것
- 상기 56-58호 고분의 봉분 복원에 있어서 주변 유구와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수에 따른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것
- 봉분의 높이와 봉분 기저부의 직경의 비율이 기 조사된 구암동 고분군 발굴자료에 근거하여 1:4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토석혼축 봉분의 함몰정도를 감안하여 1.2:4.0의 비율(20%내외)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금회 사업은 56, 58호분 및 매장분 10기를 복원정비하는 사업으로 한 봉분 내에 여러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방식의 축조가 확인되고, 각각의 고분이 동일한 축조기법을 보이고 있으므로 설계(안)과 같이 연접식 구조로 고분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배수계획도(A-402)는 고분(12기) 상부에서의 배수흐름을 알 수 있도록 봉분최고점 및 연접부 최저점 등을 표시한 계획도면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평면도와 단면도에서 계획고가 다른 부분은 수정 조치토록 하겠음.
- 고분 연접부 최저점에서 혼합토(진흙+풍화토) 두께가 1m내외인 일정 부분은 완만하게 적석 다짐을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 금회 정비대상 고분군의 매장주체부는 발굴조사보고서에서 공간적 위치가 지상식인 수혈식 석곽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면도에 고분 조성당시의 추정 지반선을 표시하여 매장주체부가 지상식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음.
- 탐방로에 설치하는 야자매트 설치는 제외하고 흙길(풍화토 등) 조성을 반영하고, 경사가 급한 부분은 목재계단 설치를 검토하였으면 좋겠음.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현황에 충실하게 고분을 정비토록 하며, 수리기술과 검토 의견을 반영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3. 만해 한용운 심우장 배수 및 조정정비

#### 가. 제안사항

-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배수 및 조정정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만해 한용운 심우장의 배수 및 마당 정비, 주변 석축 및 식재 정비에 대하여 설계하고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2) 대상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2 만해 한용운 심우장
  - 지정일 : 2019. 4. 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배수 및 조정정비
  - 사업지침 : 착수단계부터 관계전문가단[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전)문화재위원 또는 (전)문화재전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의 자문을 받아 심우장 경내 배수 및 조정 정비를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비 : 152,600천원
  - 사업내용
    - 마당 배수정비 : 집수정(5개소) 및 이중벽관(D=300, 35m) 설치
    - 마당 마사토포장 : 188.20㎡, T=100
      - \* 당초 황토경화포장에서 현지조사 후 마사토포장으로 변경
    - 석축 정비 : 기존 석축 해체 후 산석 쌓기(H=250~800, 35.4m)
    - 식재 정비 : 기존 수목 제거 후 관목(회양목 등 417주) 및 초화류(감국 등 825본) 식재
  - 정비이력
    - 2019년 : 지붕 기와고르기, 정면 목부재 부식부 산자이상 해체보수, 배면 및 우측 외벽 훼손 벽체 보수, 수목 가지치기, 배면 석축 부분해체보수 등

#### 라. 관계전문가 의견

- < 2022. 5. 10.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000 위원 >
-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내외부 보수 및 수리를 하였으나 빗물처리가 완벽하지

못하여 장마와 집중호우 시기에는 앞뒤 마당에 배수되지 못한 물이 오랜 기간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 아울러 건물 주변과 화단에 식재된 나무와 화초들이 오랜 기간 웃자람에 따라 경관과 건물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식물들의 수종과 식재시기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공간관리에 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번 부소 공사는 대지 내 원활한 빗물 처리와 외부공간 정비(특히 조경 및 나무 벌목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설계방향) 앞마당, 뒷마당, 측면(동쪽) 마당 모두 집수정으로 물을 모으지 못하는 물매와 화강석 판재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경화처리한 마감재로 통일하여 막마하도록 하며 현재 설치돼 있는 집수정으로 빗물이 잘 모여들도록 물매와 물길을 정확히 계획할 필요 있음(필요한 부분에는 트렌치 설치도 고려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하여 기존공사 때의 도면을 확보하여 파악할 필요 있음, 구청에 협조 요청)
- 앞마당 : 1) 화단을 정비하고 난립돼 있는 각종 안내판은 대문 주변 담장으로 이동 설치하여 건물로부터 조망이 트이도록 배려할 필요 있음, 2) 관람객이 잠시 머무르며 휴식,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가구 배치가 필요함, 3) 추녀 끝선에 맞추어 설치돼 있는 기단 아래 판석은 배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로 개선할 필요 있음, 4) 대문의 경첩이 고정될 수 있게 공사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 측면마당 : 1) 이 곳의 판석 또한 배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필요 있음, 2) 담장과 나란히 설치된 화단은 자연석 쌓기로 하되 현재보다 높이를 낮출 필요 있음
- 뒷마당 : 1) 남측 견치석 쌓기 축대는 원형을 유지하되 석재 사이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재시공할 필요 있음, 2) 남동측 모서리에 소규모 우물(샘)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공사 중 확인하여 재현할 수 있게 도면에 반영할 필요 있음, 3) 관람객이 건물 배면의 뒷마루에 앉아서 남쪽 석축 및 화단을 조망하여 휴식과 사색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가구를 배려할 필요 있음, 4) 뒷마당도 경화처리한 재료로 마감하여 우수처리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 있음
- \* 다음은 만해기념관 전부삼 관장님(1968년부터 심우장 출입/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심우장에 만해기념관 개설 운영, 1991년부터 남한산성으로 이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장)으로부터 2022년 5월 16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에 심우장 현장에서 외부공간에 대한 고증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1) 대문 옆의 소나무, 앞마당 북동쪽 모서리 향나무, 동측면 화단의 소나무 외에는 1980년대에 지인의 기증으로 타지에서 이식한 나무로서 만해 선생 기거하실 때의 나무는 아님
  - 2) 마당은 전체적으로 흙다짐 위에 마사토로 덮혀 있었음
  - 3) 대문은 만해선생 따님의 주택(2층 양옥 / 현재 관리사 위치) 신축 때 문기둥과

슬라브, 철문을 설치한 것임

- 4) 처음에는 장작을 때다가 연탄으로 난방연료를 바꾸었음, 현재는 아궁이가려져 있음
- 5) 남동쪽 모서리에 작은 우물이 있었으며 이 물을 허드렛물로 활용하였음
- 6) 남서쪽 모서리의 창고 위쪽은 장독대로 사용하였음
- 7) 동쪽 접근로는 원래 급한 경사의 물길이었으며 양편의 좁은 길에 작은 다리가 걸쳐져 있었음
- 8) 건물에서 북쪽의 조망은 담장 넘어 시야가 띄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22. 5. 10.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복원정비분과 000 위원 >

- 기존 식재목 중 향나무와 소나무의 생장을 위해서 은행나무 제거 필요
  - 은행나무는 길지 않은 수령과 특별한 식재 의미가 없고, 현재도 향나무의 수형과 생육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식물성장에 가장 중요한 배수 문제 해결 필요
- 기단 밑 소나무 뿌리는 주근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절단이 필요하며, 뿌리부 절단 시 소나무 상부 생육문제를 고려하여 전정이 필요함
- 담장 밑 정원은 자생수종 중심의 의미있는 정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됨
- 정원 앞에 해설판 등 다양한 형태의 같은 내용 시설물은 심우장과 정원디자인을 고려하여 하나만 배치
- 후원의 화단 교목은 건축물에 대한 위협, 불량한 생육을 고려하여 제거하되 대체 관목으로 재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화계 형식으로 현재의 단을 낮추고 식재화단 면적을 조금 늘려 향기나는 관목 또는 관상가치가 높은 자생관목과 초본류로 정원을 설계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 심우장을 뒷마루에서 머무르며 관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을 제안
- 건물처마의 우수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경관, 관람 저해)

## 마. 현지조사 의견

< 2022. 8. 31.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복원정비분과 000 위원, 보수분과 000 위원 >

- 전체적으로 배수가 부적절하고, 불량한 식생 및 시설경관, 부적합한 박석포장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배면 석축은 기존 자문의견대로 견치석 쌓기 축대를 유지하되 석재 사이 모르타르를 제거하도록 함
- 기단 상면(2단)의 화강석 판석을 제거하고 강회포장으로 변경시공할 필요가 있음
- 우물 복원 시 위치, 깊이를 확인하여 디테일과 재료가 과다설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건물에 영향을 주는 수목 뿌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시공 시 조사용 트렌치를

설치하여 수목의 근계부 등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하매설물 및 시설을 확인한 후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목은 노거수와 역사성이 있는 소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등을 보존하고 보존 수목 전지, 뿌리돌림, 단근 등의 보호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함
- 새롭게 식재하는 수목은 전통수종으로 하며, 한용운님과 관계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배식(예:불두화 등)하고 과도한 밀식보다는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선정하기 바람
- 건물의 기단부에 변형된 부분을 보수하여 수정할 것
- 동측 식재지의 원지형 표고를 확인하여 회복하고 석축높이를 결정할 때 반영할 것
- 식재지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도록 소박하게 꾸미고 공간의 분위기에 적합하게 조성하도록 함
- 석축 쌓기에 대하여 시공 전 재료선정 및 시험시공을 통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함
-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반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전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함
- 임시 설치된 관리사무소는 장래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함

#### 바. 검토의견

- 석축쌓기 형식이 기존 석축의 소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마사토 다짐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우물 추정 위치 등은 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목 및 초본류 식재계획은 매우 밀실하고 화려한 감이 있으므로 심우장 건물 및 주변과 어울리도록 축소하는 것이 좋겠음
- 적정한 마당배수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마사토 다짐 구간, 우물 추정지 구간, 박석 설치 구간은 시공 전 발굴기관의 발굴(시굴)조사를 선행토록 함
  -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관계전문가 현지자문을 통해 수목정비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목은 수목 보호 조치를 시행(뿌리돌림, 단근, 수목전지)하고, 경관에 맞지 않은 수목은 제거하며, 만해와 관련된 수종을 조화롭게 식재토록 함
  - 동측 석축은 높이를 낮추고 유공관은 수량계산에 근거하여 반영토록 하되, 석축 입면도는 구간생략 없이 보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4. 부여 가림성 성벽 정비

### 가. 제안사항

-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가림성」 성벽 정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5년도 발굴조사 실시 이후 정비되지 않은 가림성 내성 동성벽의 초축 성벽을 최대한 존치하며 기 정비구간과 조화롭게 정비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가림성(사적)
  -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일원
  - 지정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수리공사 개요)
  - 사업명 : 2022년도 부여 가림성 성벽 정비 설계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설계금액 : 2,500,000천원('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 사업지침 :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받아 성벽 정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가림성 내성 동성벽 정비 98m
      - 교란된 성벽들 해체 정비(높이 3.5m~8.5m)
      - 성벽 쌓기(높이 6.5m~8.0m)
      - 회곽로(폭 3m 내외) 조성 및 사면녹화, 배수시설 설치
  - 정비이력

| 연도        | 내용  |
|-----------|---|
| 1991      | 남문지 서쪽 성벽 정비 L=67.5m  |
| 1992~1995 | 남문지 서쪽 성벽 정비 L=114.5m                                       |
| 1997~1998 | 동문지 북측 성벽 정비 L=10m, 동문지 남측 성벽정비 L=17m                       |
| 2008~2011 | 남문지 동쪽 성벽정비 L=92.2m   |
| 2016~2018 | 동문지 남측 성벽 보호조치 A=1,794m <sup>2</sup> , 동문지 북측 성벽 정비 L=57.5m |
| 2021~     | 동문지 북측 성벽정비 L=76.5m(공사중)                                    |

##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5. 16. 설계자문 / 문화재수리기술위원 000, 공주대 교수 000, 발굴조사단 000 >

- 정비 시기는 가림성 초축 시기인 백제시대에 맞추어 하단 3.4m내외, 상단 4~5m 내외로 기존 정비구간 성벽과 조화롭게 계획함
- 초축 성벽은 가능한한 최대한 구간을 존치시키며, 하부의 안정을 위해 복토·다짐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기 발굴된 성벽의 노출범위는 기 정비된 인접 성곽의 지반선으로 계획하여 초축 성벽 및 지반 보강토는 매립하는 것이 좋겠음
- 성벽 구조 및 재료는 면석의 재질 및 산지 검토, 지반조사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 전 2~3개소 정도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구조 및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마. 검토의견(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초축 성벽을 최대한 존치하며 기 정비구간과 조화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관계전문가 의견을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받아 추진하고자 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성벽의 정비는 기 정비된 구간과 조화되도록 최소한의 정비를 하되, 수축구간의 정비는 초축이 아닌 수축구간의 양식에 맞게 조정토록 함
  - 성벽외부 배수시설은 제외하고 상부성벽 받침석은 재검토토록 함
  - 복토구간을 일부 낮추고 초축 구간 상부면석을 일부 노출하여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5.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 가. 제안사항

-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등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잔존유구와 '96년 조사자료, 종합정비계획보고서('96년) 및 기존 복원된 내·외 남문루와 북문루(개거식) 등을 토대로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임.
- ※ 제5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22.6.28) 심의결과 : 보류
  - 설계 추진을 위한 복원 관련 조사 및 연구(각종 문헌자료 및 기 수리자료 확보 및 분석)를 통해 복원의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담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담양 금성산성(사적)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등
  - 지정일 : 1991. 08. 2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설계
  - 사업예산 : '21년 : 130,000천원(설계), '22년 : 900,000천원(서문루 복원)
  - 공사예정금액 : 1,290,200천원
  - 사업지침
    - 2022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서문루의 복원을 시행한다.
    - 2021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멸실된 동문루, 서문루 복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서문루 건물개요>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 면적  | 20.08㎡     | 기둥   | 원기둥             |
| 주칸  | 정면3칸, 측면1칸 | 처마   | 흘처마             |
| 양식  | 무익공        | 천정   | 연등천장            |
| 구조  | 3량가구       | 지붕   | 우진각 지붕          |
| 기단  | 자연석 육축 위   | 기둥크기 | 우주 D360 평주 D330 |
| 주초석 | 자연석 덩벙주초석  | 처마길이 | 정면 주심에서 1,350mm |
| 마루  | 장마루        | 높이   | 육축 상부에서 5,070mm |

<서문루 육축 정비>

- 서문지 우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21.4m), 높이(문루초석하부 레벨)
- 서문지 좌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1.95m), 높이(문루초석하부 레벨)
- 육축 상부 T150 마감석 쌓기, 통로 바닥 T150 마감석 설치

<동문루 건물개요>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 면적  | 18.99㎡     | 기둥   | 원기둥             |
| 주칸  | 정면3칸, 측면1칸 | 처마   | 흘처마             |
| 양식  | 무익공        | 천정   | 연등천장            |
| 구조  | 3량가구       | 지붕   | 우진각 지붕          |
| 기단  | 자연석 육축 위   | 기둥크기 | 우주 D360 평주 D330 |
| 주초석 | 자연석 덩벙주초석  | 처마길이 | 정면 주심에서 1,320mm |
| 마루  | 장마루        | 높이   | 육축 상부에서 5,160mm |

<동문루 육축 정비>

- 동문지 우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3.18m), 높이(문루초석하부 레벨)
- 동문지 좌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9.8m), 높이(문루초석하부 레벨)
- 동문지 좌측 기존 등성계단 해체보수
- 육축 상부 T150 마감석 쌓기, 통로 바닥 T150 마감석 설치

(4) 보수이력

- 1988년 잡목제거 및 지표조사
- 1989년 잡목제거 및 학술조사서 발간
- 1990~94년 잡목제거
- 1995년~96년 서문옹성(40m), 서문성벽(16m), 남문성벽(59m)보수
- 1996년 잡목제거, 남문성벽보수(97m), 금성산성 보수, 정비, 보존계획 용역수립, 연동사 삼층석탑보수
- 1997년 남문지 여장보수(500m)

- 1998년 성곽보수(183m)
- 1999년 동문지 보수, 남문지 성곽보수(233m)
- 2000년 내·남문루 복원, 내성보수(194m)
- 2001년 내성보수(183m)
- 2002년 서문지측 성곽 및 치성2개소 보수(70m)
- 2003년 서문지측 성곽 보수(83m)
- 2004년 북문지 및 주변 성곽 보수(130m)
- 2005년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84.1m), 북문지 좌측 성곽 보수(9.70m)
- 2006년 2005년도에 이어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96.8m)
- 2007년 2006년도에 이어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88.0m)
- 2008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 104.3m), 동문~북문간 탐방로 성곽 정비(27.7m)
- 2009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 116.7m)
- 2010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 101.0m)
- 2011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 120.0m)
- 2012년 북문루 복원
- 2013년 남문지 좌측 여담보수(221.6m)
- 2015년 내남문지 성곽보수(16.1m), 내동문지구간 성벽 및 여장보수(26.4m)
- 2016년 내남문지 성벽보수(21m)
- 2017년 성곽주변 잡목제거, 충용문보수
- 2018년 서문지 우측 성벽보수(17.7m)
- 2020년 서문지 좌측 성벽보수(11.1m)

####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02. 25 / 000(수리기술위원), 000(수리기술전문위원) >

- 금성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초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409년에 개축하였다. 임진왜란 때 파괴된 것을 1610년 개수하고 1622년 대장청을 건립하였으며 1653년 성첩을 중수한 것으로 전한다. 이후 동학농민운동 때 객사, 보국사 등 10여 동의 관아와 군사시설이 불탔다.

1994년부터 성곽복원사업을 착수하여 내남문, 서문, 동문을 복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금성산성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초창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주로 형성되었으며 동학농민운동 대 불탄 것으로 보여진다.

- 조사 및 복원
  - 금성산성에 관한 조사는 1989년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둘레 길이 6,486m, 내성 둘레길이 859m로 조사
  - 1996년 금성산성정비계획 수립
  - 1996년 서문지 옹벽 및 육축 보수

- 1999년 동문지 육축 보수
- 2000년 외남문루, 내남문루 복원
- 2012년 북문루 복원
- 동문지
  - 현재 초석 및 문지도리석 잔존
  - '96년 조사 당시 초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현재 상단의 초석은 99년 수리 시 설치한 것으로 추정
- 서문지
  - 현재 초석 및 문지도리석 잔존
  - '96년 조사에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조사
  - 보존상태 가장 양호
- 고지도
  - 해동지도에 서문은 홍예식, 동문은 개거식으로 표현
  - 여지도는 동문, 서문 모두 홍예식
  - 광여도에는 동문은 홍예식, 서문은 개거식으로 표현
  - 지방지도는 서문은 홍예식
  - 금성산성도는 개거식으로 표현
  - 담양부 금성진도는 개거식으로 표현
- 종합
  - 현재 남아있는 유구는 초석과 문지도리석
  - 문의 형태는 고지도 등에 개거식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 적고 이전의 기록도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1989년 지표조사 이후 괄목할만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먼저 발굴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가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후 복원 시점을 설정하고,
  - 문루 양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금성산성 정비계획은 1997년에 수립
  - 조사 후 정비계획 재수립 필요

## 마. 현지조사 의견

< 2022. 08. 04 / 000(수리기술회원), 000(목포대), 000(수리기술평론위원회) >

- 서문지는 1996년 지표조사보고서에 초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95년 공사당시 현황실측도와 공사계획도에 초석 3개가 남아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 초석의 위치까지 같은 것으로 판단됨.
- 동문지는 1996년 지표조사보고서에 초석이 확인되지 않으나, 99년 보수 당시 실측현황도에서 트렌치조사 도면과 함께 초석이 표현되어 있고, 계획배치도에도 초석이 표현되어 있으며, 금번 현지조사 결과 도면과 동일한 형태의 초석이 육축 위에 자리잡고 있어 99년 공사 시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석을 제 위치에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 동·서문지에는 보수·지표조사 보고서를 통해 주칸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고, 현지에 초석이 남아 있으므로 3칸×1칸의 문루로 계획하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조정함이 좋겠음.
- 육축 통로부는 확인된 초석의 높이를 고려할 때, 홍예식과 평거식은 통과높이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개거식 문루로 판단됨.
- 건물 용적은 남아 있는 초석의 중심거리를 기준으로 우선 설정하고, 기 복원사례와 비교토록 함.
- 지붕형식은 3칸×1칸 건물에 측면 주칸이 3m 이하를 팔각지붕으로 할 경우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비례가 적절치 않으므로 우진각지붕으로 계획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마루형식 : 기존에 남아있는 성곽 문루의 마루형식은 우물마루(화성 팔달문, 장안문)와 장마루(승례문, 흥인지문, 화서문)로 나타나고 있으며, 누정용 건물(방화수류정, 화홍문 등)은 우물마루, 군사용 건물(화성 포루, 공심돈, 장대, 남한산성 서장대 등)은 모두 장마루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군사용 건물에서 장마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마루로 계획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육축부는 '96년 및 '99년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황도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육축부는 이완이 확인되므로 해체 후 보수기록에 따라 재축하는 것으로 설계하되, 공사 시 초석하부 기초형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육축부 해체 후 기저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육축의 보수범위 및 초석하부 기초형식 등을 조정함이 좋겠음.
- 초석하부 기초는 육축의 적심을 견고히 설치하고, 그 위 초석 하부에 큰돌로 기초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며, 공사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함이 좋겠음.
- 서문지 등성계단은 기록에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 바. 검토의견(수리기술평론)

- 잔존유구와 '96년 조사자료, 종합정비계획보고서('96년), 기존 복원된 내·외 남문루와 북문루(개거식)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토대로 동문루 및 서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임.

- 보완과정에서 추가확보한 자료에서 서문지의 경우 '95년 공사당시 현황실측도와 공사계획도에 초석 3개가 남아 있고, 동문지의 경우 '99년 보수당시 실측현황도에 트렌치조사 도면과 함께 초석이 표현되어 있어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석을 제 위치에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서 문루 모두 그 위치와 규모가 확인됨.
- 새로 확보된 도면을 기초로 하여 용적을 설정하였음.
- 통로의 폭과 육축의 높이는 홍예나 평거식보다 그 규모가 작고 금성산성도(1860년대 후반) 및 담양부 금성진도(1895년)에서 성내 모든 문루를 개거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개거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루의 일반적인 지붕형식이 팔작이긴 하나, 문루 측면폭(3미터 이하)의 규모로 보아 합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 기 복원된 내남문루(측면2칸, 3.94m), 외남문루(측면1칸, 3.18m) 및 북문루(측면1칸, 2.5m)의 경우 종합정비계획보고서('96년)에서는 모두 팔작으로 계획하였으나, 복원시 내남문루를 제외한 2개 문루는 우진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 석축하부 기초형식조사 및 육축 해체 후 기저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형식을 조정할 계획이며, 문루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여 금회 계획한 육축 및 문루 초석 하부기초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천시 목부재 보호를 위해 우장막을 설치기로 함.
- 본 사업은 기술지도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기술지도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할 계획임.

##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성산성도(19세기) 등을 참고할 때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조정함이 타당함.
  - 문루 초석 하부기초에 대한 조사와 육축 해체 후 기저부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2-7차-006)

### 6.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

####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사적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2021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차 복원정비분과 회의에서 조건부가결되고, 2022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복원정비분과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에 대한 제3차 소위원회 회의(2022. 7. 26.)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북도 부안군
  -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유천리 요지(사적)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번지
    - 지정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
    - 공사예정금액 : 약 십억원
    - 사업지침 :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마터(6구역 1호 가마) 보호각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77호, 2017.4.20.)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을 참고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사업내용 : 가마터 보호각 건립공사 및 주변정비
      - 보호각 규모 : 정면 1칸, 측면 11칸(33,000mm × 7,800mm, H 6,320mm),
      - 보호각 구조 : 줄기초 및 철골조
      - 보호각 형태 : 목재판재 및 유리창호 외부마감
      - 주변지역 탐방로계획(진입 및 관람동선), 배수로 및 주변정비
      - 철거공사 : 임시보호각(비닐하우스), 펜션, 예식장 철거
- ※ 제2차 소위원회('22.6.16.) 시 변경내용 : 규모는 보호각 내부의 기존 중앙 통과

관람로를 제외하는 등 보호각 폭과 높이를 기존 설계안의 규모 (41.84m×17.60m, H 9.26m)보다 대폭 축소(31m×7.5m, H 5.5m)하였고, 주변의 보호각의 형태 및 재료와 유사하게 계획하였음

※ 제3차 소위원회(22.7.26.) 시 변경내용 : 평면 및 단면 치수계획을 비례 및 모듈, 유구, 관람 유효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보호각 내부의 습도조절, 환기 등을 위하여 폴딩도어와 실링팬을 적용하였으며, 입면 등을 변경 계획하였음

(4) 제3차 소위원회 회의(22.7.26.) 결과 : 원안가결

※ 복원정비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21.11.23.) 결과 : 조건부가결

- 보호각의 디자인, 규모, 형태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검토한다.
- 소위원회는 남해경, 조인숙, 위광철 위원과 수리기술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 제2차 소위원회 회의(22.6.16.) 결과 : 부결

- 보호각 계획(안)에 대한 다음 세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
  - 보호각 디자인은 주변 경관 및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
  - 보호각 내부의 습도조절, 환기, 조명, 관람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종횡단면에 유구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 전·중·후 유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보호각 규모는 유구 보존에 지장이 없고 비례 및 모듈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 라. 향후계획

- 제3차 소위원회 회의 시 언급되었던 2호 가마에 대한 유구 표현, 내부 지표 표면수 및 처마 낙숫물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설계도서 작성 제출 시 설계승인 예정

####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접수 7명



## 7.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의견수렴(안) 보고

### 가. 제안사항

-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존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의견수렴(안)을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보존원칙 수립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 (2) 신청내용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의견수렴(안)
  - 추진배경 : 1960년대 국가에 의한 문화재 보호가 시작된 이후 사회, 문화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환경 또한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존원칙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화유산이 갖는 역할을 알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함
  - 추진경과
    - ('21. 12월)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연구용역(1차) 완료
    - ('22. 2월)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용역(2차) 계획 보고 및 발주
    - ('22. 3월)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용역(2차) 계약 체결
    - ('22. 4~7월) 연구용역(2차) 착수보고, 검토회의 1~4차
    - ('22. 8~9월) 연구용역(2차) 중간보고, 검토회의 5~6차, 토론회 1차, 명칭 공모
  - 사업내용
    - 적용범위 : 장소성을 지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건축물에서 마을·도시까지 포함
      - \* 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동산문화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장소와 관련된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유산은 그 범위에 포함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를 포괄)
    - 구성형식 : 서론을 제외한 5개 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은 본 조문과 더불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조문으로 구성

<<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구성 >>

서 문 : 서론부터 제1조 / 1개 조항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6개 조항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4개 조항

▲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6개 조항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10개 조항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3개 조항

○ 향후계획

- ('21. 9~10월) 문화재 보존원칙(안) 의견수렴

\* 문화재위원회 및 수리기술위원회 각 분과, 문화재분야 관련 단체·협회 등

- ('22. 10월) 문화재 보존원칙(안) 토론회(2차) 개최

- ('22. 11월) 연구용역(2차) 최종보고회 개최 및 완료

- ('22. 12월)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선포식 개최(국립고궁박물관)

(4) 신청인 의견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의 수립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뿌리이자 민족문화 계승·발전의 원천인 문화유산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까지 온전히 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접수 7명

붙임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의견수렴(안) 1부.

# 「(가칭)문화유산 보존원칙」 의견수렴(안) 보고

'22. 9. 27.(화) / 보존정책과

## I 구성형식

- (적용범위) 장소성을 지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건축물에서 마을·도시까지 포함

\* 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동산문화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장소와 관련된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유산은 그 범위에 포함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를 포괄)

- (구성형식) 서론을 제외한 5개 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은 본조문과 더불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조문으로 구성

\* 호주의 「버라 현장」, 중국의 「중국 문물고적 보호준칙」의 사례를 참고

### <<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구성 >>

서 문 : 서론부터 제1조 / 1개 조항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6개 조항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4개 조항

▲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6개 조항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10개 조항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3개 조항

## II 주요내용

- 서 문 : 안 서론부터 안 제1조

- 원칙의 배경과 필요성, 원칙의 사용자, 적용범위와 사용방법을 기술(서론)
- 중요성(Significance)과 원상, 보존조치, 보존대상물, 관리와 활용을 정의(안 제1조)

※ '중요성'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켜야할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총합으로 '원상'은 그러한 중요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

- [제1장] 보존원칙 :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 문화유산은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하며, 가치는 원상으로 구현되는 바 이를 유지하고 개입 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지향(안 제2조~ 안 제5조)

※ '원상'은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의미, 맥락, 정신 등 무형적 속성으로 구현 (6개 속성)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유산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와 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기술(안 제6조·제7조)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해당 가치는 주기적인 재평가와 서술이 필요함을 기술(안 제8조~ 안 제11조)

※ 현행의 **예술적, 경관적 가치**는 **미적가치**로 통합하고 기존에는 없던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연관, 전통적인 사용 등의 **무형적 측면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신설

○ [제3장] 보존과정 :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

- ①조사 및 연구, ②중요성평가, ③계획수립, ④계획실행, ⑤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토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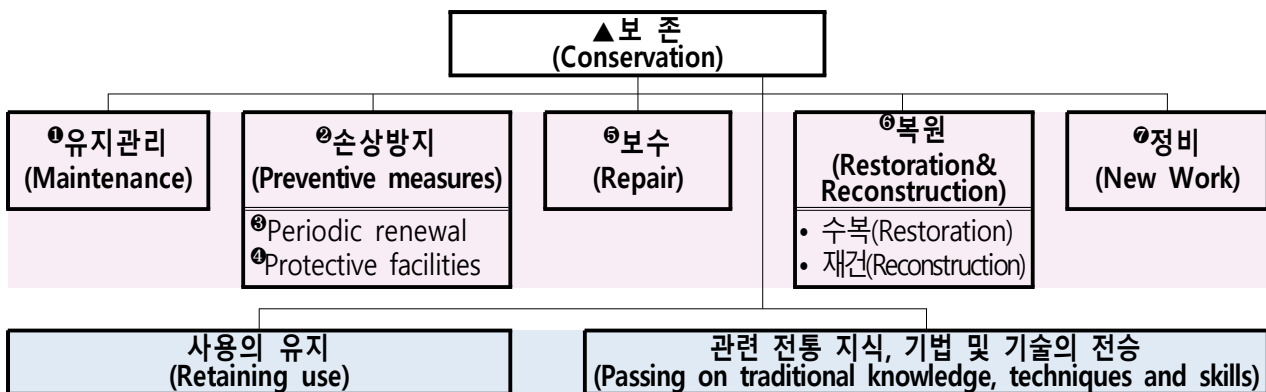
※ 특히 **중요성 평가 단계**는 문화유산이 지닌 **추상적 가치**들을 실제 **구체적인 속성과 연계**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 기술문(SoS)**에 작성하도록 명시, 이는 향후 보존조치 과정에서 활용

○ [제4장] 보존조치 : 안 제18조부터 안 제27조

- 유형적 차원(유지관리, 손상방지, 보수, 복원 및 정비)의 개입과 무형적 차원의 조치(사용의 유지, 관련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에 대한 **설명, 조건과 고려사항 기술**

<< 문화유산 보존조치 세부구분 >>

유형    무형



○ [제5장] 관리와 활용 :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

- 관리(보호체계/정책과 계획/자원/조사연구개발/소통과 참여)와 활용(전시와 해설/교육과 체험/관광자원 화/산업화)시 준수사항 및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원칙과 고려사항 기술

III | **향후 추진계획**

- 명칭공모 및 관련 단체·협회 의견수렴 '22. 9월~10월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토론회(2차) '22. 10월
- 연구용역(2차) 최종보고회 개최 및 완료 '22. 11월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선포식 개최 '22. 12월

**붙임 1**

**2022년 보존원칙 목차(안)**

| 장                        | 조항   | 비고  |
|--------------------------|--|---|
| <p>서 문</p>               | <p>▲ 서론 (작성필요)<br/>                     ▲ 왜 필요한가<br/>                     ▲ 누구를 위한 것인가<br/>                     ▲ 어디에 적용되는가<br/>                     ▲ 어떻게 사용하는가</p> <p>(안 제1조) 용어의 정의</p> | <p>[용어 정의의 구성]<br/>                     1) 중요성과 원상<br/>                     2) 보존행위<br/>                     3) 보존대상물<br/>                     4) 관리·활용</p>   |
| <p>1장<br/>보존원칙</p>       | <p>(안 제2조) 가치기반 보존</p> <p>(안 제3조) 원상 유지</p> <p>(안 제4조)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p> <p>(안 제5조) 신중한 접근</p> <p>(안 제6조) 유산 공동체의 참여</p> <p>(안 제7조) 관리·활용의 기본방침</p>  | <p>[원상의 속성]<br/>                     1) 위치, 배치와 주변환경<br/>                     2) 형태와 디자인<br/>                     3) 재료와 물질<br/>                     4) 용도와 기능<br/>                     5)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br/>                     6) 의미, 맥락, 정신, 사상 등 무형적 속성</p> <p>[신중한 접근]<br/>                     1) 최소개입<br/>                     2) 시대적 층위 존중<br/>                     3) 식별성·가역성</p> |
| <p>2장<br/>가치의 이해와 적용</p> | <p>(안 제8조) 전제</p> <p>(안 제9조) 가치의 종류</p> <p>(안 제10조) 가치의 평가와 서술</p> <p>(안 제11조) 가치 보존의 적용</p>   | <p>[가치의 종류]<br/>                     1) 역사적 가치<br/>                     2) 미적 가치<br/>                     3) 학술적 가치<br/>                     4) 사회적 가치</p>  |
| <p>3장<br/>보존과정</p>       | <p>(안 제12조) 전제</p>   |   |

| 장                                  | 조항  | 비고 |
|------------------------------------|---|----|
|                                    | <p>(안 제13조) 조사 및 연구</p> <p>(안 제14조) 중요성 평가</p> <p>(안 제15조) 계획 수립</p> <p>(안 제16조) 계획 실행</p> <p>(안 제17조) 모니터링 및 관리</p>  |    |
| <p><b>4장</b><br/><b>보존조치</b></p>   | <p>(안 제18조) 전제</p> <p>(안 제19조) 유지관리</p> <p>(안 제20조) 손상방지</p> <p>(안 제21조) 보수</p> <p>(안 제22조) 복원</p> <p>(안 제23조) 수복</p> <p>(안 제24조) 재건</p> <p>(안 제25조) 정비</p> <p>(안 제26조) 사용</p> <p>(안 제27조) 관련 전통 지식·기법·기술의 전승</p> |    |
| <p><b>5장</b><br/><b>관리와 활용</b></p> | <p>(안 제28조) 관리</p> <p>(안 제29조) 활용</p>   |    |

| 장 | 조항                  | 비고 |
|---|---------------------|----|
|   | (안 제30조) 디지털 기술의 적용 |    |



**□ 왜 필요한가?**

문화유산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보존에 관한 원칙의 수립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뿌리이자 민족문화 계승·발전의 원천인 문화유산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까지 온전히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 원칙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과 기관에 속하여 정책·시책·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사람, ▲문화유산에 보존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실천기준과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어디에 적용 되는가 ?**

중요성을 지니며 장소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서

- ▲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부터 근·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 ▲ 공간적으로는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서 마을 그리고 도시까지
  - ▲ 차원적으로는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유물 등의 유형적인 것에서부터 관련된 사용, 전통 지식·기법·기술 등 무형적인 것까지
- 를 포함한다. 이는 지정 또는 등록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어떻게 사용 하는가 ?**

원칙은 서문과 5개의 장 30개의 조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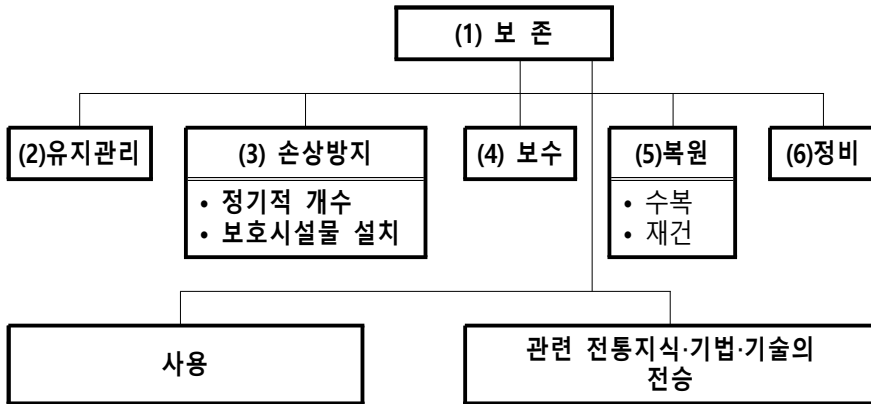
- ▲ [서문 : 서문부터 제1조] 은 원칙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 ▲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을,
- ▲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은 가치의 종류와 그 적용방법을,
- ▲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은 보존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 ▲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은 보존조치 종류별 설명, 제한사항과 고려사항을,
- ▲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은 관리와 활용의 종류와 기본방침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원칙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중요성”이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해야 할 역사적, 미적, 학술적,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2) “원상”이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유·무형의 속성의 집합을 말한다.

(3) “보존”이란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지속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돌보는 모든 행위로서 유지관리, 손상방지, 보수 등 유형적 차원뿐 아니라 관련 전통의 사용과 지식·기법·기술을 이어가는 등의 무형적 차원을 포함한다.



(4) “유지관리”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일상적 돌봄 행위를 말한다.

(5) “손상방지”란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해설

1-(1) 중요성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야 하는 당위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1-(2) 원상과 관련해서는 제3조를 함께 참조한다.

1-(3) 보존은 유형적 차원과 무형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 **유형적 차원** :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개입(유지관리, 손상방지, 보수, 복원 및 정비 등을 포함한다)

▲ **무형적 차원** : 문화유산의 사용을 유지하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 기법과 기술을 이어가는 것(무형적 차원의 보존행위는 필요에 따라서 유형적 차원의 보존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 가령, 민속마을 내 전통가옥은 지속적인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1-(4) 유지관리는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보호시설물의 점검, 청소, 잔디를 깎는 등의 일상관리 행위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개입조치와는 구별된다.

1-(5) 손상방지는 다음과 같은 보존조치를 포함한다.

▲ **정기적 개수** : 짧은 내구연한을 가진 구성체의 훼손으로 인하여 다른 중요한 구성체의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조치

▲ **보호시설물 설치** :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호시설(예, 보호각, 소방, 전기안전 설비 등)을 설치하는 조치

(6) “보수”란 손상되거나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1-(6) 보수는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는 개입조치로서 일상적인 돌봄인 유지관리와는 구별된다.

(7) “복원”이란 강력한 증거에 의해 문화유산을 이전의 알려진 모습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말한다.

1-(7) 수복과 재건은 문화유산을 이전의 알려진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1. 수복 :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일부 도입하여 문화유산을 알려진 모습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말한다.

2. 재건 : 문화유산을 알려진 모습으로 되돌리는 조치이나 그 실행과정에서 새로운 재료가 대부분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복과 구별되는 조치를 말한다.

(8) “정비”란 사용에 적합하도록 문화유산에 변화를 주는 조치를 말한다.

1-(8) 정비는 ▲문화유산에 새로운 전시 또는 안내시설, 주차장, 탐방로, 경관조명 등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장소 내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이 사용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사용”이란 문화유산이 가진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문화유산에 적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1-(9) 사용은 문화유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이용을 포함한다.

(10) “관련 전통기법”이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구성체의 물질을 생산·제작하는 방법뿐 아니라 이를 가공·시공하여 문화유산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말한다.

1-(10) 전통기법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과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11) “관련 전통기술”이란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전통기법을 구사하는 장인들의 숙련된 솜씨를 말한다.

(12) “구성체”란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물질로서 지질, 고고유적, 건물과 구조물, 식물군 등을 말한다.

1-(12) 구성체는 인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까지,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가구, 장비, 내부 마감 등을 포함한다.

(13) “유물”이란 문화유산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문화유산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말한다.

(14) “내용물”이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의 이해와 해석에 기여하는 장비, 가구, 장식품 및 예술작품 등의 물건을 말한다.

1-(14) 산업유산의 경우 그곳에서 사용된 기계, 장비 등을 말하며, 종교유산의 경우 예배공간 내 상징물, 가구, 장식품 등을 말한다.

(15) “주변 환경”이란 문화유산의 중요성의 일부이거나 이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경관 및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16) “의미”란 문화유산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느낌과 심상 또는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17) “맥락”이란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가시적,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행, 관습, 전통지식, 기타 무형적인 표현 등을 말한다.

1-(16) 맥락은 다른 문화유산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이해되기도 한다.

(18) “관리”란 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구축하거나 그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8) 관리는 법·제도의 정비, 정책·시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9) “활용”이란 문화유산이 가진 기존의 가치를 증진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새로운 파생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으로서 문화유산의 사용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 관광, 상품화 등 보다 광범위한 이용을 포함한다.

1-(19) 활용은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용을 포함한다.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 가치기반 보존

- (1)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우리가 해당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며 이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의 상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2) 문화유산은 중요성을 표현하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3)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존은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제3조 원상 유지

- (1) **(원상의 속성)** 원상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구현하는 유·무형적인 속성의 집합으로서 각 속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 문화유산이 형성된 당시의 문화적·사회적 배경, 지역적 특수성, 해당 문화유산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조직 또는 그 기능과 용도 등을 반영하는 속성을 말한다.
  2. **형태와 디자인** : 미적 감각, 설계자의 창의성, 용도와 기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속성을 말한다.
  3. **재료와 물질** : 형태와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서 미적 감각,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기능과 용도 등을 반영하는 속성을 말한다.
  4. **용도와 기능** : 문화유산이 창건·제작된 의도와 목적, 당시의 시대상 등을 반영하는 속성을 말한다.
  5.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 문화유산이 창건·제작된 당시의 기술수준, 창작자의 숨씨 및 이를 관리해온 전통과 방법 등을 반영하는 속성을 말한다.
  6. **의미, 맥락, 정신, 사상 등 무형적 속성** : 문화유산이 창건·제작된 당시 또는 변천과정에서의 사상, 정신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형성된 의미와 맥락 등을 반영하는 속성을 말한다.

**3-(1)** 원상은 문화유산의 특정한 시기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유·무형적인 속성의 총체로서 시대에 따라 문화유산에 더해진 정당한 기여는 각 시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자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구현하는 속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원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속성은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이 있으며 의존적이다.

(2) **(위치, 배치와 주변 환경)** 문화유산은 역사적 위치와 배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유한 경관 및 인지적 측면을 구성하는 주변 환경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위치와 배치는 그것이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 **(형태와 디자인)** 창건·제작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형태와 디자인을 역사적 증거물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4) **(재료와 물질)** 창건·제작된 당시 또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재료가 손상 또는 손실되어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물질로서 인지적 특성이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도와 기능)** 역사적인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보존의 방법이다.

(6)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구성체의 보존은 전통재료와 기술 등 전통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대재료와 기술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 이용할 수 있다.

(7) **(의미, 맥락, 정신, 사상 등 무형적 속성)**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맥락, 정신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전통과 관습, 사용을 유지하고 관련 전통지식, 기법 및 기술을 전승하여야 한다.

3-(2)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에 기여하는 유물(object)과 내용물들은 해당 유물의 보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치에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유물(object)과 내용물은 함께 있을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돕고 그 가치가 증폭된다.

3-(3) 형태와 디자인은 건물 내부의 모습을 포함한다.

3-(4)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구성체의 보수는 기존의 재료와 같은 종류, 유사한 자연적·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통재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3-(5) 새로운 용도와 기능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역사적 구성체의 손실을 동반하므로 가능하다면 역사적인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6) 전통재료와 기술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오랜 세월동안 그 효과와 성능이 입증된 현대의 재료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3-(7) 유형과 무형의 속성은 상호 의존적이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무형의 속성은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유물과 내용물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맥락을 부여한다.

## 제4조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

- (1) (진정성)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는 형태, 재료, 용도,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문화유산이 매개하는 가치와 정보원에 거짓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완전성)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구체화하는 각각의 속성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즉, 문화유산은 각 시대의 정당한 기여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여야 하며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 (3) (지속가능성) 문화유산의 가치와 속성들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음을 고려하여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1. **누적된 영향** : 개별 행위와 조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와 조치의 누적된 영향이 문화유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완화방안** : 소유자, 지역사회 또는 외부 요구사항 등의 이행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이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 : 문화유산은 해당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기존의 의미가 유지 또는 강화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4-(1) 진정성을 나타내는 정보원은 모든 물리적 정보, 서면 및 구두 정보 및 조형적 정보를 말한다.

4-(3) 문화유산은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중한 접근

- (1) (숙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입은 가치에 기반한 숙의를 거쳐 최소한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금지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견지한다.
- (2) (최소개입) 개입조치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든 크든 역사적 증거물로서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5-(2) 개입의 빈도뿐만 아니라 개입의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시대적 층위 존중)** 문화유산에 더해진 정당한 시대적 기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기여라도 역사적 증거물의 일부로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4) **(식별성·가역성)** 보존조치를 통해 변경된 부분은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미래 기술의 발달과 진전된 해석으로 더 나은 보존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여러 대안 중 조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에 용이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5-(3)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결과물은 그것이 흔적이든, 건축물이든 해당 시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존이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5-(4) 보존조치가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다고 해서 문화유산의 보호에 꼭 필요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가역성을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제6조 유산 공동체의 참여

(1) **(참여)** 문화유산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용을 지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존의 가치가 유지·강화되거나 새로운 가치가 파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유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보존의 방법이다.

6-(1) 유산 공동체는 문화유산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 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관련 단체 또는 개인** : 문화유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역사회**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 **일반국민**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2) **(고려사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과 기관은 유산 공동체가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보존·관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유산 공동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 및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1. **접근성** :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구애 없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정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투명성** :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산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주성**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정책·시책·계획의 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 유산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책임과 의무)** 유산 공동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정책·시책·계획 등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관리·활용의 기본방침

- (1) **(공통원칙)** 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은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이를 구현하는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존이 전제되지 않은 관리와 활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 (2) **(관리의 방침)**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국가, 지역정부 및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각각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의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지역정부는 국가 정책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국가 및 지역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활용의 방침)** 문화유산은 그 중요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좁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7-(1) 관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문화유산이 현 세대까지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제2장 가치 이해와 적용

### 제8조 전제

- (1) **(가치의 중요성)** 문화유산의 속성은 가치에 있으므로, 문화유산의 가치에 따라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2) **(가치의 다양성)** 문화유산이 지닌 총체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규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별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 (3) **(가치의 가변성)** 문화유산의 가치는 평가 시점, 주체, 관련 정보의 양과 질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 제9조 가치의 종류

- (1) **(역사적 가치)** 문화유산은 인간의 삶과 활동을 보여주는 유·무형적인 역사적 증거물이다.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생활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유·무형적 자료에 내재되어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대성** :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당대 시대상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 국가 또는 지역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거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역사적 발전** : 특정기간 동안의 기술적 성취 또는 높은 정도의 창의성 등 역사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5. **역사 경관성** : 일정 기간 축적해 온 사상, 신념, 믿음 등을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것을 말한다.

(2) **(미적 가치)** 문화유산은 인간의 예술적 능력과 감각을 표현하고 향상시키는 매개체이며, 예술성을 보여주고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물이다. 문화유산의 미적 가치는 디자인, 형태, 재질, 표현방식과 기법, 구성요소 간 조화와 주변 환경 등에 내재되어 있다.

(3) **(학술적 가치)** 문화유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식 축적 능력과 발전적 성과를 보여주는 산물이며,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요소, 문화유산 관련 정보 등에 내재되어 있다.

1. **중요한 증거** : 특정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식 축적과 발전적 성과를 보여주는 물리적인 흔적을 말한다.
2. **중요한 정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생활 분야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 문화유산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지역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과 맥락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다.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는 그 사용 방식과 공동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상징성** : 특정 공동체,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중요한 상징물이거나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인 것을 말한다.
2. **중요한 의미** :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과 맥락으로 인해 특정 공동체,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9-(2) 미적 가치는 시각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느낌, 태도 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미적 가치는 예술적 의도와 표현방식, 감상의 관점 등에 따라 문화적·시대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 제10조 가치의 평가와 서술

- (1) **(가치평가)** 가치평가는 수집한 정보와 축적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치를 구성하는 속성이 해당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가치평가는 발굴 등 조사, 자료수집, 학술연구 등을 통해 축적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인식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주기적 가치 재평가)** 문화유산의 가치는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새로운 정보,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 특정 집단 또는 세대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의 가치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 (3) **(가치서술)** 문화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과 이를 구현하는 속성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누구나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서술 내용은 공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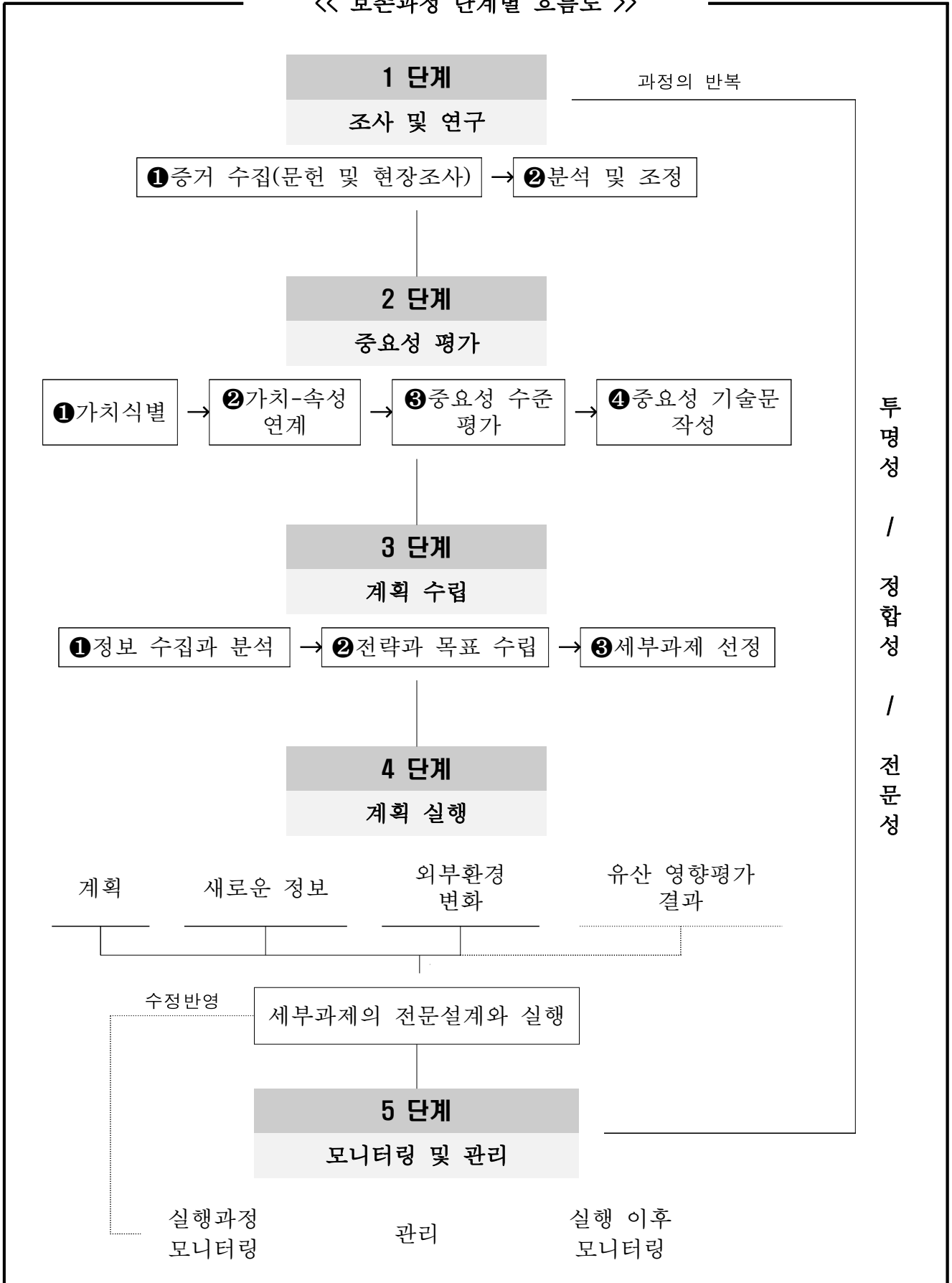
## 제11조 가치 보존의 적용

- (1) **(가치 중심의 보존과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과정은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중심의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가치 중심의 보존조치)** 문화유산을 위한 모든 형태의 보존조치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11-(1)** 문화유산의 보존과정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와 연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가치평가 및 속성규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계획실행, 가치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등 가치 중심의 과정이다.

# 제3장 보존과정

<< 보존과정 단계별 흐름도 >>



## 제12조 전제

(1) **(과정의 준수)**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과정은 조사와 연구, 중요성 평가, 계획 수립, 계획 실행, 모니터링과 관리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한다.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보의 인지, 관점의 변화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이나 실행을 변경할 때에는 보존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복한다.

(2) **(과정의 수행)** 문화유산 보존의 각 과정은 투명성, 정합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 진행한다.

(3) **(과정의 기록화)** 문화유산 보존의 각 과정 중에 이루어진 조사와 의사결정 및 실행 등 모든 행위를 기록화하고, 이후의 보존 및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영구히 보관한다.

**12-(1)** 문화유산 보존과정을 일관되고 명료하게 적용하고 과정의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과 조치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12-(2)** 투명성, 정합성 및 전문성은 각각 다음과 같다.

▲ **투명성:** 문화유산 보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과 관련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유산 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됨을 말한다.

▲ **정합성:** 보존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유산 공동체의 요구를 검토하고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의 계획에 합치하여 다른 분야의 사회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을 말한다.

▲ **전문성:** 문화유산의 조사와 의사결정 및 실행은 다학제적 전문지식과 경험 및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12-(3)**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은 문화유산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 보존 및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에 취해진 조치가 정당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조사 및 연구의 기록:** 문화유산의 연혁에 대한 조사의 기록 뿐 아니라 보존조치 이전 유산의 형태, 기술 흔적 및 과거의 조치, 공동체의 기억 등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물리적 증거와 문헌 증거 및 구술 등을 기록한다.

▲ **중요성 평가의 기록:** 문화유산 가치평가의 근거 등을 포함한다.

▲ **계획 수립의 기록:**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포함한다.

▲ **계획 실행의 기록:** 보존조치 중 발견된 기술 흔적 및 이전 개입, 조치결과 변경된 구성 요소의 수량과 위치, 공사일지 등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과 관리 기록:** 조치의 효과, 일상적 변화 등을 포함한다.

## 제13조 조사 및 연구

- (1) **(당위성)**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의 중요성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2) **(내용)**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의 총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 공간배치, 주변 환경, 형태, 구성체 등 유형적 속성과 용도, 맥락, 전통과 관습 등 무형적 속성의 역사와 변천, 현재를 면밀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 (3) **(방법)** 조사는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포함한다. 관련된 문헌 및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검증된 과학 기술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현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 제14조 중요성 평가

- (1) **(가치 식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속성이 지닌 의의, 연계되어 가치를 형성하는 관련된 다른 문화유산과 유물 등과의 맥락, 유사한 가치를 지닌 다른 문화유산과의 비교 등을 토대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식별한다.
- (2) **(가치 평가)** 식별된 가치가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속성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문화유산

**13-(1)**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는 전체 보존과정의 기초로서, 유산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 계획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 13-(2)

- ▲ 문화유산을 이루는 유형적 속성의 역사는 창건 및 역대로 누적된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포함하고, 구성체는 문화유산을 이루는 자연적, 인위적 물질요소를 가리키며 그 물질요소의 형태와 기술, 역대 변화의 형식적·기술적 흔적 및 보존상태 등을 포함한다.
- ▲ 문화유산을 이루는 무형적 속성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 전통,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공동체와의 기능적, 정서적 관계 등을 포함한다.

**13-(3)**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문헌 조사는 역사적 문헌, 근·현대의 보존과 관련된 공문서, 사진, 도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 현장 조사는 구성체와 주변 환경 상태에 대한 조사, 유산 공동체의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와 연관에 대한 구술채록, 설문조사 등을 말한다

**14-(1)** 가치평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는 속성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은 가치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동시에 가치의 증대 혹은 감소에 영향을 주는 보존과 사용의 이력과 현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14-(2)** 문화유산과 함께 중요성을 구현하는 주변 환경, 관련 유물

의 구성요소별 중요성의 수준을 평가한다.

(3) **(중요성 기술문의 작성)**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그 식별방법, 가치와 속성과의 연관성, 문화유산의 구성요소별 중요성의 수준, 가치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문을 작성한다.

(4) **(주기적 재평가)**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유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정 및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 및 맥락의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 및 변화된 관점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재평가한다.

## 제15조 계획 수립

(1) **(목표와 전략)** 계획의 수립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사항,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외부 영향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2) **(세부과제)** 계획은 목표와 전략의 실행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포함한다. 세부과제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조치, 위험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한다.

## 제16조 계획 실행

(1) **(계획 준수)**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천사

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14-(3)** 중요성 기술문(가치 기술문)은 보존과정 중 조사 및 연구, 중요성 평가 단계의 결론이자 다음 단계인 계획 수립 및 계획 실행의 근간이다.

**14-(4)** 문화유산에 대한 현재의 가치평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 및 연구에 의한 새로운 정보의 발견,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의 발생, 또는 보존 관점의 변화 등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기존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15-(1)** 목표 및 전략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에 따라 특성화한다. 또한 목표가 지속가능한지, 세부과제가 기술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15-(2)** 계획의 세부과제에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또는 지역사회 등의 요구사항 반영 방안, 문화유산의 가치 강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문화유산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평가내용에 근거하여야 하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여야 한다.



항을 확정하고 신실하게 실행한다.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과 기관은 보존의 각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충실히 배정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실천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책임감을 지니고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

(2) (실시설계)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16-(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은 계획 상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설계심사관을 배치하여 이를 검토하게 한다.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계획 수립 당시에 없던 새로운 정보의 발견, 환경의 변화 등 계획이 가진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한다.

## 제17조 모니터링 및 관리

(1) (모니터링)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정한다. 또한 계획이 완료된 이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기대했던 계획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유산영향평가의 예측과 대책이 유효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7-(1)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래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계획의 세부과제를 실행하는 중 문제점이 확인되면 세부과제는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2) (일상관리)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는 문화유산의 중요성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기록, 정리를 실행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수치를 분석하여 적시에 적합한 보존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 전제

- (1) **(역사적 증거물)** 보존조치는 문화유산의 수명과 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진정성, 원상 등에 대한 관독성을 증진함으로써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 (2) **(과거 기록)** 보존조치를 수행하기 전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배워야한다.
- (3) **(모든 조치의 이해)** 보존조치는 하나 이상의 조치가 결합되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보존조치에 관한 제한사항과 고려사항을 함께 인식하고 보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유지관리

- (1) **(설명)** 유지관리는 문화유산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가장 근본이 되는 보존조치이다.
- (2) **(조건)** 문화유산을 유지관리 하거나 할 주체는 명확해야 한다.
- (3) **(고려사항)**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제20조 손상방지

- (1) **(설명)** 손상방지는 경미한 범위의 정기적 개수와 방

**18-(1)** 보존조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문화유산을 역사적 증거로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8-(2)** 과거의 기록은 문화유산이 어떻게, 왜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지, 해당 조치들이 문화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의 보존조치가 문화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9-(1)** 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입의 빈도, 범위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존조치의 한 방법이다.

**19-(2)** 가장 좋은 유지관리는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람, 단체 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설비·보호각 등 보호시설물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2) (정기적 개수) 짧은 내구연한을 가진 구성체가 노후화 되어 다른 중요한 구성체의 훼손을 가속화하는 경우 정기적 개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성체는 재사용하거나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물의 설치) 방재설비, 보호각 등의 보호시설물의 설치에 문화유산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개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시설물의 설치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1.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2.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구성체를 훼손하거나 손상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3.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4. 보호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0-(2) 이 조항은 짧은 내구연한을 가진 구성체는 상대적으로 긴 내구연한을 가진 구성체의 유지를 위하여 교체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정기적 개수는 초가이영 교체, 기와 번와, 창호지 교체, 흙벽의 재바름 등 전통 또는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경미한 범위의 수리로서 보다 큰 범위의 개입인 보수와는 구별된다.

20-(3) 소방, 방범, 전기안전시설 등의 방재설비는 특히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며 한 번의 설치가 지속적인 기능의 유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문화유산의 구성체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호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 제21조 보수

(1) (설명) 보수는 문화유산의 물리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로서 기존 요소의 해체와 재조립, 기존 요소의 교체 또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을 수반한다.

(2) (조건) 보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절하다.

1. 현재 상태가 추가적인 손상 및 미래에 더 큰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2.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수가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의 범위·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3. 보수로 교체되는 요소의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고,
4. 경험 또는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해당개입이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 가능하여야 한다.

- (3) **(고려사항)** 보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범위로 한정한다.
  2. 기존 요소를 가능한 남겨야 한다. 전체 또는 일부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각각 재사용하거나 보강하여 사용한다.
  3. 새로운 재료는 기존 요소와 동일한 전통재료를 사용하며, 기존 부재의 기법을 표현할 수 있는 전통기법과 기술을 적용한다.
  4. 조치결과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향후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21-(3)** 해체와 재조립, 기존 요소의 교체 또는 새로운 재료의 도입은 설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물로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의 구조적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해체, 기존 요소의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면밀한 기록을 통하여 진정성을 유지하고 향후 해당 보존조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2조 복원

- (1) 복원은 수복과 재건을 말하며, 수복과 재건은 새로운 재료의 도입 정도에 따라 구별한다.
- (2) 복원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수복

- (1) **(설명)** 수복은 강력한 증거에 의해 가치가 없는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일부 도입하여 문화유산을 알려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 (2) **(조건)** 수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절하다.
  1. 강력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증거에 따라 조치가 실행이 되며,
  2. 수복되는 구성체의 가치가 수복으로 인해 상실되는 구성체의 가치보다 우월하고
  3.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3) **(고려사항)** 수복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명을 통해서 수복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수복으로 인해 상실되는 구성체와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다.

## 제24조 재건

- (1) **(설명)** 재건은 강력한 증거에 의해 문화유산을 원래의 알려진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수복과 같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복과 다르다.
- (2) **(조건)** 재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절하다.
  1. 강력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증거에 따라 조치가 실행이 되며,
  2. 피해를 입거나 훼손된 문화유산이 역사적·문화적·민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3. 재건이 이루어지는 곳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성하는 구성체가 없으며,
  4.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3) **(고려사항)** 재건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건은 문화유산에 적합한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고려하여 현대식 시설과 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2. 설명을 통해서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재건으로 인해 상실되는 구성체와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다.

**24-(3)** 문화유산의 모든 시기는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충분한 고증자료의 유무, 문화유산의 의미와 맥락, 다른 유사한 문화유산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재건할 수 있다.

## 제25조 정비

- (1) **(설명)** 정비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바꾸는 조치이다.
- (2) **(조건)** 정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절하다.
  1.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이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하고,
  2. 중요한 구성체에 최소한의 변화만 주고 중요한 사용이 지속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3. 가치가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가치의 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고려사항)** 정비는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체에 변화가 필요한 정비는 보수와 같은 다른 보존조치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인식한다.

**25-(3)** 중요한 사용을 위해 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체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즉시적인 개입보다는 보수 등이 필요할 때 다른 보존조치와 함께 수행하면 구성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비는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에 새로운 작업을 더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이 큰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애거나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 제26조 사용

- (1) **(설명)** 문화유산의 중요한 사용을 유지하거나 적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보존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특히, 사용이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6-(1)** 사용은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장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용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조건)** 문화유산의 사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적절하다.
1.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2.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와 맥락을 존중하여야 하며,
  3. 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체에 최소한의 변화만 주어야 하고,
  4.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용이어야 한다.

**26-(2)** 문화유산에 적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역사와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역사와 맥락을 존중하지 않는 사용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 (3) **(고려사항)**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으로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26-(3)** 사용의 강도는 사용이 문화유산의 구성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하며, 사용의 지속성은 해당 기능의 유지가 일시적인지, 간헐적인지

2. 사용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문화유산에 허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계속적인지 그 정도를 말한다.

## 제27조 관련 전통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

- (1) (설명) 관련 전통 지식, 기법과 기술은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체에 녹아 미적가치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맥락을 부여하여 문화유산의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한다.
- (2) (조건) 관련 전통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에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조건이다.
  1.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통의 지식과 기법을 기록하고,
  2.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을 전승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3.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3) (고려사항) 관련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은 전형의 유지를 핵심으로 한다.
  2.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이 과거와 정확히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한다.

27-(1) 어떤 문화유산에 있어서 관련 전통 지식, 기법과 기술의 소실은 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의 유지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7-(3) 전형이란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시기마다 이전에 사용한 방식과는 다른 해당 시기만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전통의 지식, 기법과 기술의 전승은 문화유산의 구성체를 돌보는 전통적 또는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다 진실하게 보존이 가능하게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 관리

(1) (준수사항) 관리는 좁게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행하는 유지관리를, 넓게는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각각 다음을 준수한다.

1.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고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보호할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를 선임한다.
2.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과 기관은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활용하여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보호체계 구축)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 또는 등록하고 그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며 가치가 식별되지 못한 문화유산을 목록화하여 가치 식별 등을 지원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 또는 확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구축한다.

28-(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아우르는 다음과 같은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지정·등록 : 중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은 지정 또는 등록하여 환경의 변화, 개발압력 등으로 부터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

▲ 완충구역 설정 : 주변 환경과 경관을 포함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한다. 완충구역의 설정은 '국토계획', '도시계획', '경관계획' 등의 토지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 목록화 : 가치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 또는 등록되지 못한 문화유산을 목록화 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가치 확산 :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 전시와 해석, 전통과 관습의 유지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상품화 등을 통해 가치 확산 및 증진 기반을 마련한다.

(3) (정책과 계획 수립)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 (자원의 확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각 분야별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5) **(전문인력 육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6) **(조사·연구·개발)** 문화유산의 보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

1. **문화유산 조사·연구** : 역사학, 고고학, 예술사학, 지리학, 건축학 등 다학제에 걸친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식별하고 이를 문화유산 보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한 조사는 가능한 비파괴적인 방식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요소를 이용한다.
2. **전통재료와 기법 연구** :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통재료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 현대적 전승기반을 마련한다.
3. **보존기술 개발** : 새로운 보존기술의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경험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문화유산 보존기술의 혁신을 도모한다.

(7) **(소통과 참여)** 문화유산에 대한 유산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1. **문화유산 홍보** :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전개한다.
2. **참여기회 보장**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에 유산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존조치 현장 공개와 더불어 정책·시책·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28-(6)**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요소가 보존조치 과정에서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요소는 해당 문화유산 내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부재보관소로 이관하여 전통재료와 기법의 조사·연구 또는 전시와 해석 등에 이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법의 예이다

## 제29조 활용

(1) **(준수사항)** 활용은 좁게는 문화유산의 사용을, 넓게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이용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이 가진 기존의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활용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문화유산의 원상을 훼손하지 않고 진정성을 유지한 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한다.
2. 문화유산의 중요성, 의미와 맥락을 존중하고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2)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과 관계 맺는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당국은 공동체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해당 공동체와 행정당국은 전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전시와 해석)** 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참여가 가능한 전시와 해석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이유를 전달한다.

**29-(2)** 효과적인 전시와 해석은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개인의 경험을 넓히고 대중의 존중과 이해를 높이며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 유적지의 해석과 전시에 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헌장」의 내용을 유념한다.

(4) **(교육과 체험)**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 박물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 교육,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체험은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활동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등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활동 등이다.

**29-(3)** 교육과 체험은 단순한 사실과 정보의 전달보다는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광자원화)** 문화유산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물론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축제, 놀이, 공연, 음식 등과 연계하거나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다른 유산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이야기,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6) **(상품제작 등 산업화)** 문화유산의 복제 및 축소·확대, 전통 문양을 사용한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 등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여 상품화하고 게임, 영상 및 웹 콘텐츠화 등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분야를 산

업화할 수 있다.

### 제30조 디지털 기술의 적용

(1) (적용원칙)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의 전반에 걸쳐 효율성·효과성·접근성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표준성, 접근성, 진본성, 이해성,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한다.

(2) (디지털 보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의 보존 과정에 적용할 때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입체적 기록** : 문화유산의 3차원 형상과 비형상 정보의 입체적 기록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2. **유지관리 용이성** : 기록정보는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체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의사결정 지원** : 보존조치의 효과와 영향의 예측을 돕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행위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3) (디지털 관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의 관리에 적용할 때는 다음을 고려한다.

1. **모니터링 지원** :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또는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에 지속적 또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지원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2. **행정절차의 전산화**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 해당 과정에서 생산·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30-(1) 디지털 기술 적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표준성** : 디지털 정보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작성함으로써 호환성을 확보한다.
- ▲ **접근성** : 문화유산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유산 공동체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 ▲ **진본성** : 문화유산의 디지털 정보는 당시의 기록으로 수정이나 변화 없이 관리한다. 새로운 변화를 적용한 디지털 정보는 버전을 달리하여 관리한다.
- ▲ **이해성** : 디지털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현한다.
- ▲ **무결성** : 보존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30-(2) 디지털 기술은 많은 정보의 빠른 분석과 처리, 보존조치의 효과와 영향의 예측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도록 한다.

- (4) **(디지털 활용)**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의 활용에 적용할 때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접근성 향상** : 디지털 기술 기반의 가상 전시와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시간·공간·차원의 제약을 뛰어넘는 문화유산 향유와 교육을 전개한다.
  2. **디지털 재현** : 디지털 재현 등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 있게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30-(4)** 디지털 활용의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현은 가상의 공간에 문화유산의 알려진 이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8. 「문화재수리 한식기와·전돌 사용기준(안)」 마련

### 가. 제안사항

-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재수리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진정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마련 중인 「한식기와·전돌 사용기준(안)」을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정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내구성 중심에서 수리재료 및 전통기술의 진정성과 다양성 강화로 변화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기와·전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재 전통성·진정성 향상

### 다. 전통한식기와·전돌 사용기준 추진방안

#### ① 한식기와·전돌 명칭분류 체계 개선

- (기존) 한식기와·전돌(모양, 가마형식) → (변경) 전통제작방식 및 도구 반영 정도

|                   |   |             |
|-------------------|---|-------------|
| 수제전통한식기와·전돌(전통가마) | ⇒ | 전통한식기와·전돌   |
| 수제전통한식기와·전돌(현대가마) | ⇒ | 절충식 한식기와·전돌 |
| 전통한식기와·전돌(현대가마)   | ⇒ | 현대 한식기와·전돌  |

#### ② 한식기와·전돌 제작기준 개선\*

|          |   |
|----------|---|
| 전통 한식기와  | 발반죽, 담무락, 와통제작, 수제성형, 전통가마(제외 : 원토, 건조) |
| 절충식 한식기와 | 담무락, 수제성형(제외 : 원토, 반죽, 건조, 가마 등)        |

- \* 전통한식기와 및 절충식기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작기법, 색상, 질감을 결정하는 공정에 따라 구분

#### ③ 문화재수리 한식기와·전돌 사용 기본원칙(안)

- 한식기와·전돌 범위 단계적 적용(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시 까지)

|      |                             |   |                           |
|------|-----------------------------|---|---------------------------|
| 구 분  | 1단계(기반조성)<br>【 '24년 ~ '28년】 | ⇒ | 2단계(정 착)<br>【 '29 ~ '33년】 |
| 사용원칙 | 기본원칙의 탄력적 적용                | ⇒ | 기본원칙의 정착                  |

※ 사용 기본원칙 적용완화('24 ~ '28년)

- 현대 한식기와·전돌 사용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경우
- 지리적·환경적 영향에 따라 현대 한식기와·전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 한식기와·전돌 사용 원칙

| 구 분         | 사 용 원 칙   |
|-------------|---|
| 전통 한식기와·전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문화재수리·복원에 사용</li> <li>▷ 국보, 보물 개별지정 목조문화재(필수)</li> </ul>  |
| 절충식 한식기와·전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민속 목조문화재*</li> <li>★ 목조 건축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사적, 명승 내 중요목조건축물**</li> <li>▷ 국보, 보물 주변 중요목조건축물**</li> <li>** 목조건축물(전·각·루·당 등)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li> </ul> |
| 현대 한식기와·전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및 절충식 한식기와 사용대상 외 목조건축물</li> <li>▷ 문화재 관리를 위한 건축물***</li> <li>*** 요사채, 화장실, 사무실, 전시관, 담장, 휴게실 등</li> </ul>  |

④ 전통 한식기와·전돌 품질강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인력양성

- (단기) 전통한식기와·전돌 모니터링 등 과학적 조사 추진
  - 최근 10년 동안 사용된 전통한식기와·전돌의 상태 및 품질변화 등에 대한 조사
  - 전통한식기와·전돌 품질·검사기준 개선 및 품질보증기간 신설
- (단기) 생산업체 기반시설 확충·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 (장기) 전통한식기와 공급확대 및 진정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생산거점 구축 유도

라. 향후계획

- '22. 9~12월 : 사용기준 의견수렴(수리기술회 및 유관부서, 제와업계 등)
-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용지침 제정 예정('23년 상반기)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접수 7명

□ 일시 / 장소 : 2022. 8. 25.(목) / 정부대전청사 1동207호

□ 참석 : 19명

- 위원(4명) : 김창준 위원장, 남효대 · 정광용 · 홍승재 위원
- 문화재청(15명) : 수리기술과 및 관련 소관과 직원 등

□ 간담회 결과

◆ 문화재수리기술위원<김창준 위원장, 남효대 · 정광용 · 홍승재 위원>

- 국가민속문화재는 구조적 취약점(기둥변위 및 변형 발생 등)이 있으므로, 절충식 한식기와 보다는 전통 한식기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와 생산이 필요함
- 전통 한식기와 품질검사 기준 및 흡수율, 지붕 시공방법(강회다짐 시공여부, 보토 두께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계획이 필요함
- 현대식 효율성과 전통식을 접목한 절충식 한식기와를 제시한 것은 좋은 방법이며,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절충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통 한식기와 및 절충식 한식기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함
-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제시된 기와별 장·단점 등 포함)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함

◆ 기획재정담당관

- 전통 한식기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행정규칙보다는 강제성이 있는 법령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보존정책과

- 전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현대식 효율성과 전통 수제 방법을 접목한 절충식 한식기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형문화재과

- 절충식 한식기와 사용이 바람직함

◆ 근대문화재과

- 국가민속문화재는 부재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으므로 절충식 한식기와 보다는 전통 한식기와를 사용하였으면 좋겠음
- 교체 부재에 표시하는 내용에 대한 표준 양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